

영진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일각하여 고등보통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영진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 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영진고등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57길 9(북현동)에 둔다.

(개정 2016.8.25)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관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4.3, 08.12.1)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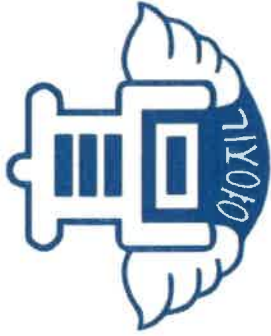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8.12.1)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할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정하는 정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3, 2019.4.24)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9.4.24.)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022. 04. 22.

학교법인 영진학원

제 2 장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개정 1991.4.3) 제9조의2 (예산과 결산의 공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5.8.31) (개정 2006.11.1)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익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채제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채제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지출하여야 하며, 이 지출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예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예산의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고 각각 1년간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4.24.)

제13조 내지 제17조 (신설 1991.4.3) (삭제 2006.11.1)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1991.4.3., 06.11.1.2014.12.1.2016.8.25)

1. 이사 8인 (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개정 2006.11.1)

1. 이사 4년
 2. 감사 2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삭제 2006.11.1)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1997.5.29, 06.11.1)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개정 2005.8.31)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재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재방이사는 전학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2006.11.1) (개정 2008.12.1)

제20조의3 (재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재방이사는 2인으로 한다.(신설 2008.12.1)(개정 2014.12.1., 2016.8.25)

제20조의4 (재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재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재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재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재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 한다.

(조신설 2008.12.1)

제20조의5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영진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조신설 2008.12.1)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91.4.3, 06.11.1)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997.5.29., 2022.04.22)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06.11.1)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신설 2006.11.1) (개정 2008.12.1)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12.1)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2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임원을 대표하고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1.4.3. 97.5.29. 05.8.31. 2019.4.24)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1.4.3. 97.5.29. 05.8.31. 2019.4.24)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8.12.1)

제2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임원을 대표하고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1.4.3. 97.5.29. 05.8.31. 2019.4.24)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해제의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해제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의 선출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91.4.3)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08.12.1)

제 2 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 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회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9.4.24.)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재의하고,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1.1. 2019.4.24)

② 이사회 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 른 장소에서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1.1. 2019.4.24)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1991.4.3)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음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정참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의 재 회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04.22.)

제30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결정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04.22.)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조선설 2006.11.1) (조개정 2008.12.1)

제31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재회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1.4.3)

1. 제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권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5.29, 06.11.1)

제31조의 2 (사학윤리강령 준수)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신설 2005.8.31)

제 4 장 수 의 사 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의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광산업
2. 파수원 및 입업
3. 증원투자
4. 기타 부대사업

제 5 장 해 산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4.3, 2019.4.24)

제34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1991.4.3)

제35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1.4.3, 2019.4.24)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판 임 용(개정 2019.4.24.)

제36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

용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1991.4.3, 93.3.1, 06.11.1, 2019.4.24.)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1991.4.3, 2019.4.24)

③ 제2항의 교원을 신규임용 함에 있어서는 공채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법인의 정학이념 구현에 동의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5.8.31)

④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하여 공채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

⑤ 공채채용의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8.31)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4.3, 2019.4.24)

제37조 (기간제교원)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해당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9., 2019.4.24., 2020.01.07)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1999.12.9)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9.12.9)

(조신설 1991.4.3)

제37조의2 (신설 1999.8.31) (삭제 2004.3.12)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38조 (후직의 사유) 교원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후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후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후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후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4.3, 97.5.29, 02.9.24, 08.12.1, 16.8.25, 2019.4.24)

1. 신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를 포함 한다.)(개정 2019.4.24.)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원해·지변 또는 전사·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해외국민교육기관에 임사로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종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조에 따른 유아류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신설 2018.8.30.)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군무를 하게 되거나 제5조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재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신설 2018.8.30.)(개정 2019.4.24.)

제39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4.3. 97.5.29. 02.9.24. 08.12.1)

1.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8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3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8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합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18.8.30.)

6의2. 제38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임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8.8.30.)

7. 제3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8조 제9호의 규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군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8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11. 제38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8.8.30.)

제40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4.3)

③ 제38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직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1991.4.3)

제41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8조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게는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한다.(개정 1991.4.3., 2008.12.1., 2020.12.29)

② <삭제> [2020.12.29.]

③ <삭제> [2020.12.29.]

제42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5.29)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1.4.3. 2019.4.24)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4.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1991.4.3)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내기를 명한다.(개정 2019.4.24.)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4.24.)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재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9.4.24.)

제43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0.12.29.)

제44조 (의사)에 관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정체처분 또는 사립학교법 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담

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글학과외의 제폐에 의하여 폐지되거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4.3)

② 교원은 원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정제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 (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신설 1991.4.3. 93.3.1. 9 9.8.31)

제45조의1 (교원 특별승진임용) ① 교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 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제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 퇴직할 때

2. 제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 제1항의 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 로 정한다.

제46조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시 기, 대상, 금액,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하되,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1.4.3) (개정 1993.3.1)

제47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군 무상복 불참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의 발령 을 하지 못한다.(신설 1991.4.3)

제 3 장 교 원 인 사 위 원 회(신설 1991.4.3)

제48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 항을 심의하제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 (이하“인사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개정 2006.11.1. 2019.4.24)

제49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1. 1)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9.4.24.)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4.24.)
- 제50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에서 10 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1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나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특정인의 인사에 관제되는 회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53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의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4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5조 (운영 제책)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정책위원회

제56조 (교원정책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정책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04.22.)

② 교원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장이 임명한다.

1.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신설 2022.04.22.)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2.04.22.)

③ 교원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조 및 제56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 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개정 2022.04.22.)

2. 외부위원은 우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1991.4.3., 2016.12.20.)

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신설 2022.04.22.)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04.22.)

제56조의 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그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16.12.20.)

제57조 (교원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 (정책의결의 기한) 교원정책위원회가 정책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책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정책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 (제척사유) 교원정책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정책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정책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정책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0조 (위원의 기피 등) ① 정책대상자는 교원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정책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정책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인 될 수 있도록 임명원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신설 1991.4.3)

제61조 (정책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자가 교원에 대한 정책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정책의결 요구와 동시에 정책대상자에게 정책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신설 1991.4.3.)(개정 2019.4.24.)

제62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제정) ① 교원정책위원회는 정책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물을 조사하여야 하며, 정책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정책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 (정책의결) ① 정책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1.4.3)

② 교원정책위원회는 정책사건을 심리하고 정책의결을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정책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원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원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정책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원자가 법인인 때에는 정책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4.3., 2020.12.29.)

④ 정책처분권자는 정책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1.4.3)

⑤ 교원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64조 (정책 의결시의 정상참과 등) 교원정책위원회가 정책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정제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경력, 재직의 정, 정책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5조 (정책사유의 시효) 정책사유의 시효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에 의한다.(개정 1991.4.3., 2020.12.29.)

제66조 (교원정책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정책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원자가 임명한다.

제67조 (운영세칙) 교원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편 (삭제 1991.9.16)

제68조 내지 제81조

제 4 편 사 무 직 원

제82조 (지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

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91.4.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9.4.24.)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19.4.24.)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9.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4.24.)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원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면 퇴직한다.

제83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군속승진·대우직원 선발·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위촉·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원자가 공개채용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1.4.3. 9.7.1. 01.10.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개정 1991.4.3.)

④ 기타 사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한다.<신설 2020.12.29.>

제84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을 준용한다.(개정 2019.4.24.)

제85조 (보수) 사무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개정 1991.4.3., 2020.12.29.)

제86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20.12.29.)

제87조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1.4.3) (개정 1993.3.1., 99.8.31)

제87조의 2(면제퇴직)① 사무원 중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지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면제퇴직 할 수 있다.(신설 2016.8.25.)

② 면제퇴직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명예퇴직 시행 계획에 따 른다.(신설 2016.8.25.)

(해목개정 2016.12.20.)

제87조의 3(사무원 특별승진 임용)① 제87조의 2 규정에 의거 면제퇴직을 하는 자가 군 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제심사를 거쳐 특별승진 할 수 있다.(신설 2016.8.25.)

② 특별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6.8.25.)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 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③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개정 1991.4.3)

제88조의 2 (임직권 및 교직원 행동강령) 임직권 및 교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대구 광역시교육청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신설 2010.11.25., 개정 2022.04.22)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9조 (법인사무 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제 정 2009.5.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 등 학 교

제90조 (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06.11.1)

제91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사무관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격으로 정한다.(개정 1998.7.15. 09.5.28)

제 3 절 정 원

제92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신설 2000.7.10)

제 1 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93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지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이하 "위원"이라 한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정수는 영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5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선출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영진고등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3배수 이내로 추천한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교원위원은 보직교사 및 학년별, 교관별, 성별 등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④ 위원 중 절반이 생진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7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

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9.5.28)

② 지역위원은 영진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권지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영진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권지지로 하는 사업자, 영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98조 (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위원에게 수당 등의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영진고등학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의익의 취득 또는 압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9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지역위원 및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②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00조 (위원장,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육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5.28. 2015.12.1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진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1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영진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2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103조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6.11.1., 08.12.1. 22.04.22)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입합격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0. 교육 및 체육부의 선정, 수탁여행 등 학부모가 정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사를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1.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추천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한다.
- ③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진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4조 (시행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2.04.22.)
-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현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03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04.22.)
-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4.22.)
- 제105조 (이사장의 재선요구)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거나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의 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에 그 재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04.22.)
- 제106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영진고등학교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 제107조 (규정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진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부흥조정위원회(신설 2001.3.8)

- 제108조 (학교교육부흥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영진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부흥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제109조 (학교교육부흥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부흥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종 학교(이하 "각종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부모, 학생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발생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대우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원보호준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께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11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2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의 이익의 취득 또는 일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3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4조 (회의재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자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5조 (위원의 재직)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6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속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채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파장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 통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법외수중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절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7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8조 (준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진고등학교의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개정 2000.7.10., 01.3.8, 2020.12.29.)

제120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학교공백이 지 또는 지방 일간지 신문에 공고한다.(개정 2020.12.29.)

제12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22조 (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최달곤	1936. 11. 3	4 년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100번지
이 사	이영희	1938. 4. 10	4 년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100번지
이 사	최세곤	1934. 9. 2	2 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649-55번지
이 사	서주섭	1929. 5. 16	2 년	대구시 남구 봉덕2동 1071번지
이 사	조배영	1942. 10. 2	2 년	대구시 동구 신암동 281-3번지
이 사	송달호	1940. 6. 20	2 년	대구시 남구 봉덕2동 929번지
이 사	방근배	1946. 3. 20	2 년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314-2번지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용되어 근무하는 교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교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4)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제21조의 재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 시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교장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제로 임명된 교장 중 교육공무원 정년을 초과한 학교장에 대하여는 1999년 8월 31일까지 임명된 것으로 본다.

(3) 일반직직 조과원칙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시교사는 이 정관에 의하여 기간제교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규정)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운영위원회 규정은 영진고등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3)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의 소집 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동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재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여 유선원으로 선임되는 재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규정의 기능직 사무보조원은 관리운영 직군의 사무운영 직렬로, 방호원은 기술직군의 시설관리 직렬로 시행일 기준으로 일괄 전환 임용한다.

(3) 관리운영 직군의 사무운영 직렬 직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정년 내 추가 인원을 채용할 경우 같은 직급의 행정직군 교육행정 직렬로 신규 임용한다. 이때 행정직군의 교육행정 직렬 정원은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정원을 승계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 제③항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당선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재방이사 정수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재방이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시 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사무직원 정원 (개정 2009.5.28)

구분	인원	비고
총계	1 명	
일반직 계	1 명	
5급(사무관)	0 명	
9급(서기보)	1 명	
기능직 계	0 명	
6급(고용원)	0 명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1991.1.24, 95.1.1, 97.1.1, 99.8.31, 09.5.28, 12.4.1, 14.4.1, 18.7.23, 20.8.6.)

직 급	직 령	행 정		기 술
		교육행정		
계		4		1
5급		1		
6급		1		
7급		1		1
8급		1		
9급				